

**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의 프로경기
출전을 위한 계약 세칙**



K LEAGUE

한국프로축구연맹

목 차

제1조. 목적	3
제2조. 계약 체결	3
제3조. 계약 기간 및 연봉	3
제4조. 계약의 승인	4
제5조. 출전자격	4
제6조. 프로계약으로의 전환	4
제7조. 임대, 이적의 불가	5
제8조. 징계	5
제9조. 계약의 해지	5
제10조. 해외 진출 후 복귀의 경우	6
제11조. 준용규정	6
제12조. 시행일	6

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의 프로경기 출전을 위한 계약 세칙

제1조 목적

본 세칙은 한국프로축구연맹(이하 "연맹")에 가입된 클럽과 클럽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간의 계약(이하 '준프로계약'이라 한다) 및 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K리그 공식경기 출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K리그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계약 체결

- ① 클럽은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으로 만 17세에 달하였거나 당해 연도에 만 17세에 달하게 되는 선수와 준프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단, 타 클럽 산하 유소년 클럽에 소속된 적이 있는 선수는 전 소속 클럽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준프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② 클럽이 준프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수는 연간 최대 3명에 한한다.
- ③ 준프로계약은 연맹이 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.

제3조 계약 기간 및 연봉

- ① 준프로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선수가 만 18세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 중 클럽은 선수에게 1,200만원의 기본급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위 기본급연액을 증액하여야 한다.
- ③ 경기의 출전 또는 승리에 따른 수당은 클럽과 선수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
제4조 계약의 승인

- ① 클럽은 준프로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연맹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1) 준프로계약 표준계약서에 따라 양자가 서명·날인한 계약서.
 - 2) (산하 유소년 클럽이 학교 소속인 경우) 소속 학교장의 동의서
 - 3) 연맹 의무위원회가 정한 'K리그 메디컬 체크 리스트'를 따른 건강검진 결과
-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클럽의 통지를 받는 즉시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이를 공시한다.
- ③ 제2항의 공시 방법은 연맹이 K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에 준프로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는 공식 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 출전자격

- ① 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시된 날로부터 3일 이후부터 K리그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.
- ② 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해당 클럽의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으로 각종 대회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. 단, 위 제1항에 따라 K리그 공식경기에 1회 이상 출전한 경우 대한축구협회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일부 대회 또는 경기의 출전이 제한될 수 있다.

제6조 프로계약으로의 전환

- ① 클럽과 선수는 준프로계약 기간 중 클럽의 요청에 의하여 프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② 클럽은 준프로계약이 종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선수에게 프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프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및 기본급연액은 선수규정 제14조 제5항 제2호 제 라.목에 규정된 우선지명선수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.
- ④ 클럽은 선수와 프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**정기**등록기간에 선수를 등록하여야 한다.<변경. 2019/06/21 개정>

- ⑤ 제4항에 따른 선수등록이 완료되어 공시되면 준프로계약은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종료된다.

제7조 임대, 이적의 불가

클럽은 준프로계약 기간 중 해당 선수를 타 클럽에 임대하거나 이적시킬 수 없다.

제8조 징계

- ① 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K리그 공식 경기에 출장하여 연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.
- ② 연맹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출장정지의 징계는 연맹이 주최·주관하는 유소년 대회 경기에도 연계하여 적용될 수 있다.

제9조 계약의 해지

- ① 클럽과 선수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프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잔여 연봉의 지급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.
- ②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클럽은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연액 전부를 선수에게 지급한다. 또한 클럽은 해당 선수에 대하여 우선지명, 자유선발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- ③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클럽은 계약 해지 전의 최종 기본급연액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기본급연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잔여 연봉 지급은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10조 해외 진출 후 복귀의 경우

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계약 기간 종료 후 해외 클럽에 입단할 경우 선수규정 제14조 제5항 제2호, 같은 조 제6항 제3호 제 다.목을 준용한다.

제11조 준용규정

선수규정 제1조, 제3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, 제4조 제6항 및 제9항, 제15조, 제26조는 본 세칙의 시행에 준용한다.

제12조 시행일

본 세칙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세칙에서 연령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.

- ① '만 17세'는 학제상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시기로 보며, '만 18세'는 학제상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시기로 본다.
- ② 준프로계약의 종료 시점은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본다. <추가.

2018/12/03 개정>



한국프로축구연맹

www.kleague.com